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뛰는 화합상주

2017년 운영성과 보고서



2018. 2

이 보고서는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의거 매년 운영상황을 시와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를 발간하며

상주시에 옴부즈맨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1년이 지났습니다.

이 제도는 경북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상주시에만 있는 제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고충민원에 열심히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편에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하여 현장을 찾아가고 시민, 관계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지난 1년여의 활동상황을 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상황 보고서”로 정리하면서 지난 1년을 성찰하는 자세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고 더욱 열심히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상주시 옴부즈맨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2017년 1년여 동안 접수한 민원은 총54건으로 이 가운데 심층조사가 필요한 고충민원은 16건으로 관계법. 관계자료 검토와 담당부서 공무원 면담, 현장방문 등의 조사과정을 거쳐 조정중재,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으로 처리 하였으며 38건은 상담민원으로 민원인과 담당부서 직원등 관련자 모두가 옴부즈맨 사무실에 모여 의견조율 등을 통하여 처리하였습니다만 홍보부족과 역량이 부족한 탓으로 생각했던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여 아쉬움이 큼니다.

어느 민원인이 옴부즈맨 사무실을 나서면서 “내 고충 민원이 해결 되지 아니 하여도 하소연 할때가 있어 좋고” “안되는 사유를 정확히 알고 나니 가슴이 후련하다” 는 말씀을 가슴에 담겠습니다.

2018년 2월

상주시 옴부즈맨 강 석 도



C · O · N · T · E · N · T · S

■ ombudsman 설치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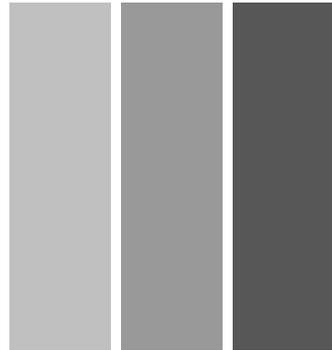
I. ombudsman 운영 현황	5
1. 도입 배경 / 5	
2. 설치 및 운영 근거 / 6	
3. 구성현황 / 6	
4. 주요 기능 및 직무 / 7	
II. ombudsman 운영 성과	8
1. 개요 / 8	
2. 고충민원 처리 유형 / 8	
3.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 9	

■ 제도 홍보

I. ombudsman 제도 홍보	47
II. 언론 보도 등	50

■ 부록

I. 연혁	55
II. 상주시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6
III. 상주시 ombudsman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62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

I. 옴부즈맨 운영 현황
-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II. 옴부즈맨 운영 성과

상주시 옴부즈맨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

I. 옴부즈맨 운영 현황

1. 도입 배경

가. 지방자치시대의 신뢰받는 행정구현 일환

- 옴부즈맨(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대리자, 후견인, 대표자」를 뜻하고, 영국·미국에서는 「민정관(民情官)·호민관(護民官)」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 옴부즈맨제도는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일종의 행정 감찰관제도로써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해 주는 보충적 국민권리 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도 행정 옴부즈맨 제도의 일환으로 1994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각종 민원의 상담·안내, 민원 종결 기능 등을 행한다.
- 상주시는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강화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자
- 상주시의회 의원발의로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5.10.02.)하여 상주시 옴부즈맨을 위촉(2016.7.11.)하고, 2016년 8월 1일부터 상주시 옴부즈맨 사무실을 개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중앙정부의 설치 권장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2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고충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 옴부즈만)의 설치·운영을 권장

2. 설치 및 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구성현황

가. 구성 및 지위

- 1) 지 위 : 상주시 소속으로 직무수행관련 독립성 보장
- 2) 임 기 :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3) 위촉방식 : 공개 모집후 시의회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
- 4) 위 촉 일 : 2016. 7. 11.
- 5) 상주시 옴부즈맨



강석도 상주시 옴부즈맨

- 위촉직(민간인)
- 비상임 명예직

- ▶ 전) 상주시청 청정환경팀장(과장)
- ▶ 전) 경제기업과장
- ▶ 전) 동문동장

나. 자격 요건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노무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주요 기능 및 직무

가. 직무 관할 범위

-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나. 직무 및 권한

-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 옴부즈맨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조정·중재
-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조정·중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맨에게 요구한 사건의 조사

다. 처리 제외 대상

- 시의회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제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맨의 행위에 관한 사항
-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진행중이거나 결정된 사항

II. ombudsman 운영 성과

1. 개요

가. 관련근거

- 「상주시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상주시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운영시간

- 주 4회 운영(월~목요일) 10:00 ~ 16:00 (1일 5시간, 주 20시간)

다. 운영장소 : ombudsman 사무실(종합민원실 옆)

라. 지원인력 : 1명

마. 직무 및 권한

-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 집단민원 조정·중재,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강구 권고
- 반복적 고질적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조정·중재 등

2. 고충민원 처리 유형

가. 시정권고 : 조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의견표명 : 조사 결과,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조정·중재 : ombudsman의 권고 이전 ombudsman의 중재에 따라 해결되는 경우

라. 조사제외 : 사실관계 검토 결과, 조례에 따라 조사를 제외하는 경우

3. 민원 접수 · 처리 현황

2017년 민원 접수 처리 현황

접수 건수	고충민원 처리 현황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조정 중재	각하 기각	취하	진행중
	계	수용	불수용	부 서 검토중				
54	38	25	3	10	9	3		4

4.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고충민원 접수내역

연번	민원요지	관련부서	처리유형	비고
1	자동차관련 체납세를 모두 납부하고서 자동차를 폐차정리 하였는데 과태료 체납고지서가 발급된 것은 부당	교 통 에너지과	조정중재	완결
2	2013년 합병된 토지에 대하여 여러 번 촉탁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처리되고 있지 않은 것은 부당	민원봉사과	수용	완결
3	주택이 화재로 전소되었지만 함께 거주하지 않은 자녀와 주소가 같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중 동 면	수용	완결
4	수로관 공사시 인접대지에 대하여 소유자 승낙 없이 수로관을 묻은 것은 부당하며 해당 토지를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시에서 매입하여 주기바람	개발지원과 남 원 동	조정중재	완결
5	사인의 토지위에 방치된 마을 간이상수도 시설물 철거요청	상하수도 사 업 소	수용	완결

연번	민원요지	관련부서	처리유형	비고
6	개인이 건축을 하면서 측량한 결과 민원인 거주지로의 주요 진입도로가 개인의 사유지임을 확인하고 민원인을 상대로 통행금지 소를 제기하는 등 통행하기가 불편하니 현재 진입 도로옆 지적도상 국가소유의 도로를 개설하여 불편함을 해소하여 주기를 요청	개발지원과	조정중재	완결
7	국유지 용도폐지 신청시 대체도로 개설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나 대체도로 개설하면 면적이 좁아져 신축이 어려워져 재검토를 요청	건설과	진행중 (수용)	완결
8	민원인 소유 부지를 측량한 결과 도로에 일부 잠식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부지에 수압 가압장치가 매설되어 있어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니 도로에 잠식된 민원인 소유의 토지를 시에서 매입요청	건설과	수용	완결
9	주택단지개발에 따른 축대설치로 우기시 인근시민들의 안전사고우려 등 주민설명회 요청	민원봉사과	수용	완결
10	갑장산 등산로 나무계단의 노후화 및 경사도가 심해 안전사고 우려 및 우회 등산로 개설요청	산림복지과	수용	완결
11	보조사업자로 교부 결정된 이후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허가조건이 되지 않는다며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당	산림복지과	조정중재	완결
12	산지개간허가를 득하고 준공검사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업체에게 비용까지 지불하였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에서 복구설계서 제출 촉구 및 과태료 부과 한 것은 억울함	산림복지과	진행중 (조정중재)	완결
13	시내일원 도로 경계봉이 깨어진 채로 있어 위험하니 교체 및 수리 요청	교통에너지과	수용	완결
14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전정공사로 빗물이 인근 농경지로 모두 유입되고 있으므로 배수 문제를 해결요청	사회복지과 복문동	수용	완결

연번	민원요지	관련부서	처리유형	비고
15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들 명의로 (아들과 아버지 반반 지분등록) 자동차를 구입하여 자동차세(취등록세 포함)를 감면받은 이후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던 아들이 비록 동일세대에는 거주하나 귀농인 혜택을 보고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아버지와 분리하게 되자 상주시에서 자동차세 감면대상자의 과세대상자 전환통지서를 받게 되었음. 동일지번내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분리하였는데 이제와 과세(가산세 포함)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세정과	진행중 (조정중재)	완결
16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2㎡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을 받았음에도 토지분할최소면적(60㎡) 이하라는 이유로 분할이 안 된다는 것은 부당함.	민원봉사과	수용	완결

상담민원 접수 현황

연번	민원요지	관련부서	처리유형	비고
1	해외인력 수급을 통하여 부족한 농촌인력을 지원하는 역할(사업)을 하고자 함에 해외인력의 국내취업을 위한 비자발급용 추천서 발급 등 시차원의 지원 요청	농업정책과	수용	완결
2	철도주변 완충녹지 지역에 대한 보상계획 여부 및 주변 노후 주택에 대한 신축 및 증축 가능 여부 문의	산림공원과 민원봉사과	수용	완결
3	지목이 유지(溜池)인 토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및 매입 가능 여부	건설과	불수용	완결
4	실제 사용되고 있는 용도로의 지목변경신청 및 합병신청	민원봉사과	수용	완결
5	축사신축 가능여부 문의	민원봉사과	수용	완결
6	보전임지구역인 산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실상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구거를 진입도로로 인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산림녹지과	불수용	완결

연번	민원요지	관련부서	처리유형	비고
7	화산들 일원에 오래전 설치한 수로가 논바닥보다 낮게 설치되어 물 이용시 양수기를 동원해야 하며, 또한 수로 바닥이 깨지고 잡풀이 무성하여 수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개선요청	건 설 과	수용	완결
8	구거부지를 농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농로중간에 통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설치한 사람이 있어 농로 이용에 불편	건 설 과	각하	완결 각하
9	토석채취공사로 인근 주택(7집) 뒤꼍에 물이차고 주택에 습기가 스며들어 옹벽 및 배수로 등의 설치후 공사를 진행해 주기를 요청	민원봉사과	조정 중재	완결
10	경리 정리후 토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경계 측량하여 영농손실금을 보상받고 실제 부족한 토지는 도로 사면을 절토하여 확보하였으나 해당 농지에 물이 솟아 경작하기가 힘드니 콘크리트 옹벽 등을 설치해주시기 바람.	농어촌공사 건 설 과	부서 검토중	완결
11	다세대주택 0동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 않고 하나의 관만 설치되었으며 이관은 시의 BTL공사시 우수관 으로 연결되어 배수가 잘 되지 않고 아파트내 악취가 심한 상태로 시 오수관으로의 연결 요청	상하수도 사 업 소	수용	완결
12	이웃집과 대지경계분쟁이 있었으며, 집 바로앞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길 요청함	건 설 과	수용	완결
13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비를 선지급 하였으나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설계비를 돌려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돌려주지 않아 협조요청	-	각하	완결 각하
14	어렵게 사는 이웃에게 토지를 제공하여 살게 하여 왔으나 최근 필요에 의해서 집을 비워주도록 하였는데 집안에 있던 짐을 집 앞에 쌓아두고 경운기로 막아놓아 들어갈 수 없게 하여 해당 토지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건축신축을 추진할 수가 없으니 짐과 경운기를 치워주기를 요청	-	조정 중재	완결 각하

연번	민원요지	관련부서	처리유형	비고
15	집 앞 음식점의 냄새 및 소음으로 생활하기가 많이 불편함 호소	환경관리과 보 건 소	조정 중재	완결
16	대규모 축사신축 반대	외 서 면	진행중	완결
17	도시계획시설결정구역의 조속한 도로개설요청	도 시 디자인과	부서 검토중	완결
18	마을 중앙로 포장 공사시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지선도 함께 포장해주기를 요청	함 창 읍 개발지원과	조정 중재	완결
19	보조 사업추진에 따른 농지전용 등 절차문의	민원봉사과	수용	완결
20	문중산을 개관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나 불법농지라는 이유로 농지원부에 등록할 수 없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니 양성화요청	산림녹지과	수용	완결
21	국도25호선 옆 농사를 지으며 도로를 건너 왕래하였으나 고라니의 도로진입을 막기 위해 도로공사에서 철조망을 설치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니 일부구간에 통행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해 주시기 바람	대구국도 관리사무소	기각	완결
22	도로에 불법적치물 이전요청 및 공부상 도로에 화단, 정화조(오페수)관이 있어 도로로 이용치 못하며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개설 요청	개발지원과 신 흥 동	조정 중재	완결
23	복룡지하차도입구(6주공일원) 도로 중앙 경계봉을 6주공 바로 앞까지 설치하여 우방공원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불법좌회전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 대책이 요구됨	교 통 에너지과	부 서 검토중	완결

연번	민원요지	관련부서	처리유형	비고
24	성동동 일원 철도변 완충녹지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민원인의 대지와 조성사업 대지경계에 담을 쌓으면 민원인 사업추진 및 통행에 불편이 있으므로 담을 쌓지 않기를 요청	산림녹지과	수용	완결
25	뱀에 물려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원이 있는지 문의	환경관리과	수용	완결
26	낙양동 000번지 토지로 들어가는 길이 없으며, 국가소유의 구거가 있는데 복개 및 도로 개설하여 진입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청	건설과	부서 검토중	완결
27	현재 상주시 사벌면 00리 일원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자 부지매입 중에 있으나, 이 일대가 도 농업기술원 예정부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부지를 제외하여도 농업기술원부지가 확정되기를 요청함.	기획예산 담당관실	부서 검토중	완결
28	배수설비 설치를 하려고 하니 시에서 설치한 오수관로가 집 앞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로와 연결공사를 하려면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시에서 당초 오수관로 공사시 통지도 없이 민원인 집 앞까지의 공사를 누락하여 지금에 개인이 배수설치비용을 과하게 부담해야하는 것은 부당	상하수도 사업소	부서 검토중	완결
29	주택 경계부분에 축조된 담 안쪽의 부지를 측량결과 일부 하천부지로 판명되어 주택지안에 포함되어있는 하천부지에 대한 매입가능 여부	건설과	수용	완결
30	점용료를 납부하면서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하천부지에 이웃에서 경계를 침범하여 경작을 하고 있어, 해당부서에서 경계를 명확히 해주기를 요청	건설과	수용	완결

연번	민원요지	관련부서	처리유형	비고
31	태양광 발전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과다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행위 업무지침(2017.8.21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공포일 이전에 접수된 건까지도 소급적용하여 화북면의 환경파괴를 막아주길 바람	민원봉사과	수용	완결
32	상주 중앙재래시장에 10여년전에 지붕(아케이트) 시설을 하면서 내부공기순환을 위하여 설치한 공간(창)으로 비, 바람이 몰아치면 눈.비가 들어와 포목장사를 하는 가게는 진열된 상품이 상하게 되는 바 일부 환기통을 막아 피해를 줄여 주기를 바람.	경제기업과	부 서 검토중	완결
33	상희학교와 중앙초등학교 사이도로끝 부분 우측(중앙공원 맞은편) 횡단보도 상에 도로와 인도 경계봉이 있어 아이들이 등하교시 통행에 많이 불편해 하니 제거하는 방향으로 검토요청	교 통 에너지과	부 서 검토중	완결
34	참고 건축계획에 따른 건축가능 부지 및 제반절차 상담	민원봉사과	수 용	완결
35	축사를 신축함에 인근토지의 승낙 없이 축사허가를 해주는 것은 부당함	민원봉사과	불수용	완결
36	신축아파트건립으로 아파트부지 인근 거주자들의 주차난이 예상되니, 2개의 신축아파트 입구중 북편은 폐쇄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기 바람	도 시 디자인과	부 서 검토중	완결
37	많은 교육생이 00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면소재 에서 센터까지의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하므로 센터 인근에 교육생들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가변차로가 확보된 버스 승강장 설치를 건의	교 통 에너지과	부 서 검토중	진행 중
38	기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 건의	교 통 에너지과	수 용	완결

다. 고충민원 처리 세부사례

1 과태료 처분 부당

● 민원 요지

- ☞ ▪ 자동차(차량번호 XX다XXXX)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에 대한 과태료 체납분(551,600원)이 부과된바 2015.11.17. 폐차 당시에 세금 체납액을 완납하고 폐차했는데 이제 와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과태료 체납고지서가 발급된 것은 부당함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관련부서와 협의(세정과. 교통에너지과)
- 폐차당시 금융기관 납입내역서 확인 (담당자 업무착오 확인)
- 관련부서 감액처리 및 민원인 유선결과 통보

2 축락등기 조속히 처리 요망

● 민원 요지

- ☞ ▪ 상주시 현신동 XXX-X 번지외 3필지에 대하여 2013.1.18 합병(토지대장상) 하여 3차례에 걸쳐 축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어 조속히 처리 요청함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관련부서와 협의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 법원방문 처리상황 확인 및 처리가능 여부조율
- 민원인 대면 합병처리 결과통보

3

주택 화재에 따른 지원 요청

● 민원 요지

- ☞ ▪ 2016. 12. 14 중동면 회상리 XXX 번지 000(민원인의 장모)의 주택이 난방중 화재로 이어져 전소됨에 따른 지원요청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중동면 사회복지 담당자와 지원방안 협의
- 공동 모금회 통해서 300만원 지원

4

공용도로 사용되는 사유지 매입

● 민원 요지

- ☞ ▪ 시에서 남성동 XXX-XX 번지(도) 수로관 공사시 인접대지인 XXX-XX 번지에 소유자 승낙없이 수로관을 묻어 향후 재산권행사에 손해가 있으며, 또한 주변시민들이 기존부터 도로(주차)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 시에서 매입하여 주시기를 요청함.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담당부서와 협의 (개발지원과)
- 매입, 사용지급, 원상복구방안 등 검토 후 매입방향으로 결정
- 토지 감정 평가 후 민원인과 토지매입 협의통보

5

방치된 간이 상수도 시설물 철거

● 민원 요지

- ☞ ▪ 집 뒷편에 간이상수도시설물을 설치하여 마을 여러 가구 에서 이용하였으나 시 지방상수도를 이용한 이후부터 간이상수도시설물은 방치되어 있어 시에서 철거해주기를 요청함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현장 확인(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 외3명)
사인의 농지위에 간이상수도시설물(콘크리트구조물)이 방치되어 있어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철거를 권고하여 철거처리 완료 (17.05.08)

6

통행금지 소재기에 따른 도로개설 요청

● 민원 요지

- ☞ ▪ 서곡동 XXX-X번지상 000씨가 건물을 신축을 위하여 측량한 결과 소유인 XXX-X번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이용자인 000를 피고로 통행금지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민원인 000은 기존 이용하던 000소유의 도로에 접한 공부상 도로인 서곡동 XXX번지(국가소유)의 도로 개설을 요청하는 민원제기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현장확인 및 민원협의(지역개발과 시설지적 담당자 외 3명)
 - 개발지원과 조치계획제출 검토
 - 상대자 000 방문상담. 조정. 중재 (3회)
 - 현장측량 도로개설 불가능 확인 (민원인 참석)
 - 개인사유지 매입도로 개설 (민원인)

7

대체도로 개설 조건 재검토

● 민원 요지

- ☞ 외답동 XXX번지일원(280,280-1,281) 에 공장신축을 하려고 하니 해당부지 내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 해당부서에 용도폐지를 요청하니 그에 따른 대체 도로개설 및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고 하나 대체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공장 용지의 부지가 줄어들어 공장을 2층으로 건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공장건축에 문제가 있으니 대체도로개설 조건을 철회 하여 주기 바람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관련담당자 건설과 경제기업과 협의 후 현장확인
- 주민들 의견 청취 후 의견서 전달 (동문동 .건설과)
- 용도 폐기 후 매각 결정 (건설과)

8

도로로 잠식된 토지 매입 요구

● 민원 요지

- ☞ 00빌딩옆 소유부지에 건축계획을 가지고 측량을 하여보니 민원인 소유의 부지가 도로에 80cm정도 잠식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부지에 수압 가압 장치가 매설되어 있어 해당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의결과 해당 장치를 옮기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여, 시에서 도로로 잠식된 민원인의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기를 요청함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측량성과도등 공부 및 현장확인(도시디자인과)
- 매입요구 (민원인 → 도시디자인과)
- 매입 결정후 보상 조치 (2017.09.26, 금액: 40.299천원, 면적:21㎡)

● 민원 요지

- ☞ ▪ 개운동 산 XXX-X(임) 주택단지개발에 따른 축대(옹벽)설치로 그 앞에 위치하고 있는 집들은 우기에 안전문제 발생우려 축대를 쌓는 것과 관련 하여 허가부서에서구조,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요청 및 공사 진행과정을 관련주민들이 이해 할수있도록 주민 설명회 요청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17.03.16 : 민원접수. 관련공무원 협의
- 17.03.20 : 현장 확인 (옴부즈맨. 시의원 등)
- 17.04.06 : 주민설명회 개최 (통 회관. 관계공무원3명. 공사관계자3명)
공사 진행과정 및 기 약속한 배수로 공사 재 확약
- 17.07.03 : 집중호우로 일부구간 식생블럭 붕괴
- 17.07.11 : 관계자회의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지시
- 17.07.12 : 옹벽공사 중단통보
- 17.08.14 : 안전 확인결과 보고서 제출
비탈면 안전성 검토 및 지반조사 보고(동서이엔지㈜)
- 17.08.18 : 주민설명회 개최 (통 회관)
 - 식생블럭 1단(소단) : 층층이 보광제 투입
 - 식생블럭 2단이상 : 설계변경 재시공

● 민원 요지

- ☞ ▪ 갑장산 등산로 6, 7부 능선 나무계단의 노후화로 계단에 박아 놓은 핀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발생 및 로프는 낡고 경사도가 심해 안전사고 발생우려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산림복지과 녹지 담당자협의
- 옴부즈맨 권고사항
 - 낡은 로프 교체 및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회 등산로 개설가능 여부 확인
- 담당자 현장 확인결과 낡은 로프(등산객 임의 설치) 철거. 교체
- 우회 등산로 개설 : 전문기관 용역 시행후 검토

● 민원 요지

- ☞ ▪ 산림복지과 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보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올타리를 설치코자 필요한 산지일시사용 신청서를 동일부서에 제출하였으나 사업대상지가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해당하여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당초 보조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해주었고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사유로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민원인이 신청한 공성면 우하리 산32번지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산양삼 올타리 설치사업은 불가함
- 인근 민원인 사업지로 장소변경 사업추진 (조정중재)

● 민원 요지

- ☞ ▪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산 XXX번지상에 산지개간허가를 득하고 산지개간 준공 검사까지 완료 될수 있도록 OO측량에 대금을 지불하였지만 현재까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시에서 복구설계서 제출 촉구 공문 및 과태료 부과 통지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산림복지과 녹지담당자, 협의
- 허가만료일이 2017.2.28일까지로 현재까지복구설계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제출촉구(2회)
- 합법적인 조건을 갖추어 준공검사를 득할 수 있도록 조치 (복구설계서 등)

● 민원 요지

- ☞ ▪ 개운동 XXX-XX번지 일원 삼각 안전지대 경계봉이 깨어진 상태이며, 삼각 안전 지대 안에 불법주정차 자주 발생
- 6주공 앞 택시 승강장에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 도로 경계봉이 깨어져 있는 상태로 안전을 위해 교체 요망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교통에너지과 협의
- 깨어진 도로 경계봉 교체 완료
- 삼각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지속적 단속실시

14 배수문제 해결요청

● 민원 요지

- ☞ 상주시 무양동 XX-XX(상주시 장애인 협회 사무실) 번지내 배수구가 별도로 없어 바닥포장을 하여 아래쪽에 위치한 무양동 X-XXX번지(전)으로 빗물이 모두 유입 되는 일이 있으므로 배수 문제를 해결요청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관련 담당자 협의(옴부즈맨 사무실)
 - 참석자: 도시디자인과 시설담당자, 사회복지과 복지담당자 개발지원과 시설담당자
- 관련 담당자 2차 협의(북문동 동장실) 및 현장 확인
- 도시계획 개설공사로 집수정을 설치 동 사업으로 배수구 연결 민원해소

15 장애인 감면 대상 전환통지는 부당

● 민원 요지

- ☞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들명의(아들과 아버지 50:50지분등록) 자동차를 구입 자동차세(취등록세 포함)를 감면
- 동일세대에는 거주하면서 귀농인 혜택을 보고자 동일번지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신고
- 2017. 10. 31일자 상주시의 자동차세 감면대상자의 과세대상자 전환통지
- 동일번지 내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만 분리) 과세(가산세 포함)를 하는 것은 부당하니 구제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함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세정과 협의 : 지방세 감면신청시 (1년내 소유권 이전시 추정) 확약으로 불가
- 관계공부 확인 및 기존판례 참고
- 지방세 심판청구

● 민원 요지

- ☞ ▪ 상주시 모동면 반계리 산XX 임야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2㎡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을 받았음에도 토지분할최소면적(60㎡) 이하라는 이유로 분할이 안 된다는 것은 부당함.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지적담당자 협의. 현장 상황 및 분할사유를 검토 분할
- 분할사유 타당하여 분할 결정통보

라. 상담민원 처리 세부내역

1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외인력지원 사업 요청

● 민원 요지

- ☞ ▪ 농촌지역에 노인인구 급증 및 노동가능인구가 많이 부족함.
이에 해외인력 수급을 통하여 농촌인력을 지원하는 역할(사업)을 하고자 함에 시차원의 지원을 요청
(해외인력의 국내취업을 위한 비자발급용 추천서 발급 등)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농업정책과 농산담당자 협의
- 연계 가능한 보조사업 검토 및 시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권고

2 철도주변 완충녹지 보상계획 및 건축가능 여부

● 민원 요지

- ☞ ▪ 북룡동 XXX번지에 본인 소유의 주택이 노후 되어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로 철도주변 완충녹지 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계획이 없다면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산림공원과 건축업무담당자와 현장 확인
- 해당지역은 사업계획 구역 밖으로 보상계획이 없으며
-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진입도로가 없어 신축, 증축은 불가능하며 주택수리는 가능함을 대면 통보

3 유지 용도폐지 가능여부

● 민원 요지

- ☞ ▪ 중동면 오상리 XXX 외 1필지 상에 있는 유지에 대한 용도폐지 여부 및 매입 가능 여부 확인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건설과 담당자 협의
- 용도폐지를 할 수 없는 유지로 매각이 불가함을 통보

4 지목변경 및 합병조치 요구

● 민원 요지

- ☞ ▪ 상주시 헌신동 XXX-X(전),XXX-X(전), XXX(묘) 3필지가 본인 소유토지로서 XXX번지는 공부상 묘지이나 묘는 선산으로 이장후 실제 전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목 변경요청 및 XXX-X외 2필지는 동일 소유자이므로 합병조치요청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민원인의 지목 변경신청 및 합병신청에 대하여 민원봉사과 담당자와 공부 확인 및 현지 출장 등을 통하여 처리 조치.

5

축사 신축에 따른 진입로 인정

● 민원 요지

- ☞ ▪ 경지정리에 따른 공부 정리시 같은 농로임에도 한쪽은 구거 다른쪽은 농로로 지목이 구분되어 있어 진입도로가 없는 관계로 축사 신축이 불가하다는 담당자 의견으로 화산동 XXX-X번지상 축사신축 가능여부 문의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건축·농지담당자와 협의결과 건축 신고시에는 건축법상 인정도로가 있어야 하나 인접한 농로는 지목상 구거로 되어 있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기 어려움이 있어 축사건축이 불가함 통지
(추후 지목변경 검토 의견 표명)

6

비포장 구거 사실상 도로 인정

● 민원 요지

- ☞ ▪ 외남면 송지리 보전임지인 산XX(임)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계획함에 있어 수년전부터 사실상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XXX-X(구) 번지를 진입도로로 인정 및 개발할 수 있도록 요청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자, 건설과 하천담당자,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자 협의결과
- 일반적으로 도로가 지목상 구거일지라도 경작자들이 농로로 이용하고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다면 사실상 도로로 인정되지만 비포장 구거는 도로는 인정되지 아니함으로 개발 불가함을 통지

● 민원 요지

- ☞ ▪ 관내 계림동 소재 화산들인 낙상동 XXX-XX 담 주변에 수십년전 설치한 수로가 시멘트블럭 으로 논바닥 보다 낮게 설치되어 모내기등 물을 필요할시 양수기를 동원하여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블록이 깨어진 바닥 등에 잡풀이 무성하여 배수가 전혀 안되는등 수로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요청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건설과 .계림동사무소 협의
- 포크레인 동원 잡풀 및 퇴적물제거 배수로 확보
- 이후 영구시설은 농업 기반공사와 협의 개선토록 시정권고

● 민원 요지

- ☞ ▪ 부원동 XXX번지 구거부지상 있는 농로 중간에 통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설치한 사람이 있어 농로 이용이 불가능하여 해당 몽리민 들이 경찰서에 형사고발한 상태임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건설과 담당자 협의 각하
- 경찰서 고발을 한 상태로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강구

● 민원 요지

- ☞ ▪ 2016. 8. 22 방문 제기한 개운동 산XXX-X번지상 토석채취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인근 주택(7집) 뒤편에 물이차고 주택에 습기가 스며들고 있어 배수로 설치후 공사 시행요구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민원봉사과장 등 담당자와 협의 건축 행위에 앞서 선결토록 조치

● 민원 요지

- ☞ ▪ 청리면 원장리 XXXX-X번지는 670평(2,216.2m²)으로 1997.7.21 경지 정리후 벼농사를 지어 오던중 토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적은것 같아 국민권익위에 진정·경계측량을 실시한바 30평정도가 적어 지금까지의 영농손실금 381,920원을 보상받고 도로 사면을 절토하여 부족한 면적을 확보하였으나 복구한 농지에 물이 솟아 경작하기가 힘들어 콘크리트 옹벽설치를 농어촌 공사에 건의하였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조치요망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농어촌공사, 건설과 담당자와 협의결과 청리반계 앞들인 해당지구는 여러 곳이 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구역 전체를 같이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부에 건의 및 예산 확보토록 시정권고

11 | 우수관 연결로 악취해결

● 민원 요지

☞ ▪ OO하이츠는 A동~ F동으로 신축당시 B동에는 우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여 설치하지 않고 하나의 관만 설치되었으며 시의 BTL사업시 우수관으로 연결되어 배출됨으로 아파트내 악취가 심한 상태임.

현재 B동의 옥상에는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우수관이 따로 필요가 없는 상태로 기존의 설치된 관을 우수관이 아닌 시의 우수관으로 연결하여 아파트 내 악취해결 및 오수의 우수관 유입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 요청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 시설담당자와 협의후
B동 하수관과 시우수관 연결공사 시행으로 사업완료
(2017. 5. 31 사업완료)

12 | 하천부지 진출입 사용

● 민원 요지

☞ ▪ 낙동면 구잠리 XXX-XX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옆집(XXX-XX)과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이 있었으며, 측량 및 소송결과 민원인의 건물 일부를 철거 하였으며, 민원인은 사인소유의 하천부지(XXX-X)를 경유하여 화장실을 돌아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불편한 점이 있음. 집 바로 앞 국가소유의 하천부지(XXX-X)가 있으니 그 하천부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길 요청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자와 현장 확인후 국가 및 사인소유의 하천부지에 대하여 민원인등의 대지 앞에 위치한다고 하여 단독적인 사용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웃 간에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으로 원만하게 사용하기를 권고함

● 민원 요지

- ☞ ▪ OO건축사에 축사설계비 명목으로 기 300만원을 지급, 이후 시 보조사업 으로 추진 중인 감타래 설계비용으로 300만원을 다시 건넸으나 타 건축사와 비교 하였을 때 설계비용이 비싸고 설계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설계 비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어 환불요청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사인간의 금전거래상의 문제로 사법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법무사 등에 자문을 구하도록 안내

● 민원 요지

- ☞ ▪ 어렵게 사는 이웃에게 지천동 XXX-X번지 토지를 제공하여 집을 짓게하여 살게 했으나 현재는 다른곳 에 거주하는집이 있고 저희 땅에 위치한 집주인이었던 000는 집안에 있던 짐을 집 앞에 쌓아두었으며 또한 집 앞에 경운기를 세워 두어 집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고 있어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판매 과정 중에 있으며 토지를 구매하려는 분은 곧 건물 신축을 하려고 하나 불편함이 많으니 조속히 해당짐과 경운기를 치워주길 요청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현지출장 조사결과 민원인이 요청한 사항은 사인간의 감정문제와 마을회 소유의 진입로 이용 문제이므로 사인간 및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원만히 해결 할수 있도록 안내

● 민원 요지

- ☞ ▪ 앞집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며 날씨가 더워져 문을 열 수밖에 없는데 식당 소음과 냄새로 불편함.

이런 것들로 인해 앞집과 계속해서 다툼이 있고 이로 인해 부인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음.

관공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보건위생과 동 건축 담당자 현지 출장
- 처마 끝에 비치된 냉장고를 건물 안으로 배치하고 행정지도로 원만히 해결

● 민원 요지

- ☞ ▪ 전원주택지로 각광받고 음식점이 많이 있는 외서면 관동리에 대규모 축사 신축 시 주민 피해가 크니 기 허가된 건축 신고서를 반려해 주기 바람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건축법상 하자 없는 건축신고 수리에 대하여 반려처리는 할 수 없으며 건축주와 면담 이해 설득 중

● 민원 요지

- ☞ ▪ 상주시 지천동 XXX-XX임 일원 도시계획시설로만 결정해 두고 도로개설 공사를 해 주지 않아 세금부담은 가중되는데 반하여 토지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람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경북대 상주캠퍼스 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되었으나 재학생수 감소, 많은 예산 소요 등으로 후순위가 된 사업지로 예산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는 상황임을 통지

● 민원 요지

- ☞ ▪ 대조2리 XX-XX 일원 마을 중앙길(4m 정도)은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고 있으나 인가가 있는 지선(폭 3m, 길이48m 정도)에는 포장을 하지 않고 상수도 공사만 되어있는 상태로 이용이 불편하니 중앙길 공사시 함께 덧씌워기 공사를 해주기를 바람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함창읍. 개발지원과 담당자와 현장 확인결과 도로 폭이 좁은 지선으로 포장 장비가 들어 갈수 없어 이후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토록 시정권고

● 민원 요지

- ☞ ▪ 상주시 흥각동 XX번지내 농업기술센터에 추진하는 보조사업인 쉼터 조성 (농막4평,저온 저장고 2평)사업추진에 따라 농지전용 등의 절차문의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민원봉사과 건축담당자 및 농지전용담당자 현장 확인 협의
- 20㎡미만의 농막으로 농지전용신고 제외대상으로 협의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 민원 요지

- ☞ ▪ 상주시 외서면 가곡 산XX번지 문중산에 10년전 2만여평을 개간하여 감나무, 산초, 고사리 등을 재배하고 있으나 불법농지라는 이유로 농지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여 농지원부를 작성치 못하여 보조사업 등 하지 못하는 등 제약을 받고 있으니 양성화 하여 주기 바람.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민원봉사과 담당자, 산림복지과 담당자 협의
-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이 2017. 6. 3.부터 시행중에 있으나 이는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이용 또는 관리 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문중은 농지취득자격이 없음을 안내

● 민원 요지

- ☞ ▪ 20여년전에 개통한 국도25호선(낙동 분황 XXX)옆에 위치한 전 500여평에 농사를 짓고 있음에 지금까지 도로를 건너 왕래를 하였으나, 고라니가 도로에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철조망을 도로공사에서 설치하여 불편하니 일부에 문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6.19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소관업무로서 상기민원내용을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상주지사에 전달
- 기존에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 3차례 찾아온 민원인이며, 안전상의 이유로 진출입문을 설치 해줄 수 없음을 통지한 상황

● 민원 요지

- ☞ ▪ 도로에 불법적치물 이전요청
상주시 신봉동 XXX-X번지 비포장도로에 개인이 설치한 화단, 정화조(오페수)관, 전주가 자리하고 있어 통행이 어려워 개인사유지로 통행하고 있으니 이전 및 포장요구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현장 확인 및 관련부서(신흥동. 개발지원과) 협의 후
- 관련된 주민 3가구와 2차례현장 협의 (사유지 일부 편입 승낙서 징구 등)
- 개발지원과 주민숙원사업비 30.000천원 투입 (17.12.26 완공)

● 민원 요지

- ☞ ▪ 00지하차도 입구(6주공일원) 도로 중앙 경계봉을 6주공 바로 앞까지 설치하여 우방공원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불법 좌회전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 대책 요구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교통에너지과 담당자와 현장 확인 후
- 개선방안 검토 시정권고

● 민원 요지

- ☞ ▪ 상주시 성동동 XXX-XX번지 일원 산림녹지과 에서 철도변 완충녹지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민원인의 대지와 조성사업 대지경계에 담을 쌓으면 민원인 사업추진 및 통행에 불편이 있으므로 담을 쌓지 않기를 요청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산림녹지과 공원녹지담당자 협의
현장출장확인 결과 경계지점 민원인의 통행로가 협소하여 이동에 어려움 있음.
현재는 완충녹지조성사업의 부지를 정비하는 단계로, 시설 설치 등 본격적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담장 설치 등은 보류토록 권고

25 뱀에 물려 입원 지원 대책

● 민원 요지

- ☞ ▪ 2017년 7월경 뱀에 물려서 1개월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원이 있는지 문의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경북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 시행 및 청구절차 안내

26 진입로 개설요구

● 민원 요지

- ☞ ▪ 낙양동 XXX번지 소유자로 해당토지로 들어가는 길이 없으며, 국가소유의 구거가 있는데 복개 및 도로로 개설하여 진입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청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개발지원과, 건설과 시설담당자 협의 후
- 현장 확인 결과 해당 구거는 물의 흐름을 유지해야 하며,
- 구거의 폭의 일정 면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인의 토지를 승낙 받아야 복개 및 도로개설에 가능함으로 사후검토
- 우선 마을 뒤로 돌아가는 샛길을 이용하여 농사에 이용하기를 권유

● 민원 요지

- ☞ ▪ 현재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XX 삼덕리 일원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자 부지매입 중에 있으나, 이 일대가 도 농업기술원 예정부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부지를 제외하여도 농업기술원 부지가 확정되기를 요청함.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자 협의,
- 해당부지는 도 농업기술원 사업부지에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되며,
- 향후사업부지가 확정되어야 정확한 사업 부지를 알수있다는 내용 민원인에게 전달

● 민원 요지

- ☞ ▪ 배수설비 설치를 하려고 하니 시에서 설치한 오수관로가 집 앞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로와 연결공사를 하려면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시에서 당초 오수관로 공사시 통지도 없이 민원인 집 앞까지의 공사를 누락하여 지금에 개인이 배수설치비용을 과하게 부담해야하는 것은 부당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상하수도사업소 배수설비 담당자 협의
- 당초 공사시 빈집이었으며, 해당부지는 저지대로 오수관로로 연결이 불가능한 지역임

● 민원 요지

- ☞ ▪ 공성면 영오리 XXX-X번지 일원 주택지에 전소유주로부터 담이 축조되어 있으며 건축물 축조를 위하여 측량결과 담이 쳐져있는 안쪽의 일부가 하천부지임을 확인하게 되어 담 안으로 편입되어 있는 하천부지에 대하여 매입가능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건설과 하천계 담당자협의
- 현장 등 여건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검토 후 해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공부 확인 결과 매각대상이 되지는 않는 하천부지로 해당 부지가 꼭 필요하다면 공성면에 하천점용신청을 하여 이용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통보.

● 민원 요지

- ☞ ▪ 낙동면 내곡리 XX-X 구거 3,207㎡ 중 1,236㎡를 2004년부터 점용허가를 득하여 경작 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점용료를 납부하면서 2년간 경작을 하지 못하였는데, 해당 구거부지 옆 땅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000이 무단으로 점용허가 없이 경계를 침범하여 경작을 하고 있으니 시 관련 부서에서 측량을 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람.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건설과 농지담당자 협의결과 사인간의 다툼으로 민원인이 현황측량(경계측량)을 하여 경계 침범이 확실한 경우 조치할 수 있는 상황으로 통지

● 민원 요지

- ☞ ▪ 태양광 발전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과다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업무지침(2017.8.21 공포)을 시행함에 있어 공포일 이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 정상처리하지 말고, 천혜의 환경을 가진 화북 입석의 경우 소급적용하여 환경파괴를 막아야 할 것임.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적용 될 수 없다는 원칙(법률 불소급의원칙)이 있으며,
-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일부 부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자 올해 2017.8.21 상주시 개발 행위허가 운영지침이 발령되었으며
- 특정지역에 확대 및 소급 적용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 통지

● 민원 요지

- ☞ ▪ OO재래시장에 10여년전에 지붕(아케이트) 시설을 하면서 내부 공기순환을 위하여 설치한 공간(창)으로 비, 바람이 몰아치면 눈. 비가 들어와 포목장사를 하는 가게는 진열된 상품이 상하게 되는 바 일부 환기통을 막아 피해를 줄여 주길 요청.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지역경제 담당자 3인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소방법등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적법하게 환기구시설을 설치해주는 방안검토 (사선으로 막아 환기는 가능하고 눈비바람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구조 등)

● 민원 요지

- ☞ ▪ 당사자는 스쿨존지역의 등하교 안내도우미로 일하고 있으며, 상희학교와 중앙 초등학교 사이 도로끝 부분 우측(중앙공원 맞은편) 횡단보도상에 도로와 인도 경계봉이 있어 학생들 등하교시 통행에 많이 불편하니 제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횡단보도상에 도로 경계봉이 있는 것은 통행에 불편하나
- 등하교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태우기 위하여 횡단보도앞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경계봉을 유지하는 것이 통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 이해 설득

● 민원 요지

- ☞ ▪ 서곡동 XXX-X번지 일원 창고건축 가능여부 검토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건축민원 담당자 업무협의 (도시계획 용도지역등)
- 측량 설계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신고토록 안내

● 민원 요지

- ☞ ▪ 중덕동 XXX번지 일원 축사신축관련 인근토지의 승낙없이 축사허가 해주는 것은 부당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건축법상 가축사육 제한조례 등 관계법에 적법하게 허가된 상황으로 건축 허가시 인근 토지주의 승낙을 받도록 하는 조건은 없음을 이해 설득

● 민원 요지

- ☞ ▪ 거주지 인근에 아파트가 신축 되면 서북쪽 아파트 진입로 주변에 아파트 세입자들이 주차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인근에 거주자들은 기 주차가능했던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에 현재 두군데인 신축아파트 입구 중 북쪽 입구는 기 인근 거주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폐쇄하고 서쪽입구 한쪽만을 입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협조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도시디자인과 담당자 협의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공사중인 곳이며, 곧 준공에 임하게 되는데 인근 주민의 요청사항이 있다고 하여, 이를 반영하여 변경공사를 시행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이해 설득.

● 민원 요지

- ☞ ▪ 글로벌 리더쉽 센터는 매주 2천여명의 교육생이 이용하고 드나드는 곳이나, 화서면 소재지에서 상용리 까지 들어가는 버스가 없어 많은 교육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화서면 상용리 XXX-X번지 일원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가변차로를 포함한 버스 승강장(정류장)을 설치하여 주시기를 요청함.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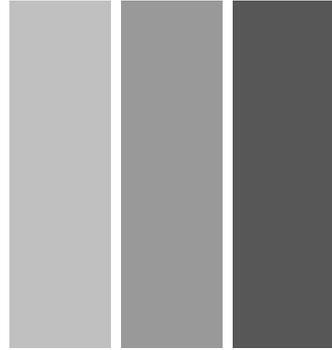
- ☞ • 관계공무원 협의 및 현장 확인 결과
(옴부즈맨, 교통행정담당, 화서면장, 도로보수담당, 글로벌리더쉽센터담당자)
- 부지가 확보되면 승강장 설치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도로 옆 부분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어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다소의 위험요인이 있지만 승강장 표지판을 세워주는 방안 검토

● 민원 요지

- ☞ ▪ 교통시설물 정비요청
 - (해병전우회앞)원광유치원 앞 좌측 반사경 기울어져 있음(방치상태)
 - B&B 모텔 후문쪽 (쪽쪽갈비쪽) 곡각지점 반사경 흔들림
(나사조임, 조율 필요)
 - OO아파트 뒷편 경계봉은 담과 경계를 두고 세워야 하는데 자리가 있어 여전히 주차함. 담과 더 띄워서 경계봉을 세워야 차가 주차를 안 할 수 있음

●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

- ☞ • 건설과 교통에너지과 담당자와 협의 현지출장 시정조치



제도 홍보

- I. 옴부즈맨 제도 홍보
- II. 언론보도 등

상주시 옴부즈맨

제도 홍보

I. ombudsman 제도 홍보

1. ombudsman 안내 배너 상시 안내

- 장 소 : 시청 민원봉사과 출입문 및 ombudsman실
- 안내사진



2. 안내 포스터 및 팸플릿

기존 행정구제 제도와의 비교

구분	옴부즈맨	행정심판	행정소송
목적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불만·부담을 받은 경우 권익구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행정감독	행정작용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익구제
성격	비정규제도	정규제도	정규제도
기간	제한없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없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없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범위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 부작위, 불권·부당 등 포괄적)	행정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	행정의 적법성 유무 (처분권, 관할·내용 포함)
접근성	접근성 높음	행정소송보다는 접근이 용이	접근성이 매우 어려움
비용	무료	행정소송보다는 경제적 부담은 적은 편	경제적 부담이 높음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뛰는 화합상주
상주시 옴부즈맨이 함께 합니다!



행정기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상주시 옴부즈맨으로 연락주세요!

- 상주시 옴부즈맨실 안내
- 대표전화 : (054) 537-7684, 7685
- 팩 스 : (054) 537-6168
- 37211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 시청사 1층 종합민원실 내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뛰는 화합상주!

고충민원!!

상주시 옴부즈맨과 상담하세요!!



상주시 옴부즈맨

옴부즈맨의 기능

- 시민권리 구제 기능
- 행정의 민주적 통제 기능
-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기능
- 행정개혁 기능
-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 기능



상주시 옴부즈맨이 여러분과 가까운 곳에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민원
-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으로 인한 민원
-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원
-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옴부즈맨 소개

옴부즈맨이란 무엇인가?

옴부즈맨(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이며,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비법적 시민권력 보호제)입니다.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운영

- 옴부즈맨 수 : 1명
- 임기 및 신분 : 2년(1회 연임 가능), 비상임 명예직
- 직무
 - 고충민원 상담 및 조사 처리
 -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 법적근거 :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 옴부즈맨은 시 직제와 별개로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고충민원 해결

고충민원이란 무엇인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고충민원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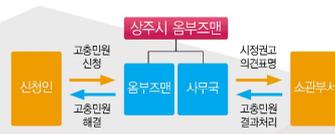
시민은 누구나 상주시 옴부즈맨실을 방문하여 옴부즈맨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 월 ~ 목요일, 10:00 ~ 16:00
- 사무실 위치 : 시청사 1층 종합민원실 내
- 전화문의 : (054) 537-7684, 7685

상주시 옴부즈맨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옴부즈맨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옴부즈맨 운영체계



고충민원 처리절차

고충민원 신청	옴부즈맨실 방문 신청
민원 분류	기제사항 및 내용 검토, 단순민원 부서 이첩
조사여부 결정	신청인 및 소관부서에 조사 개시 통보
조사 실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 처리
조사결과 통지	신청인, 소관부서에 통지

3. 음부즈맨 활동

1) 음부즈맨 관련자 회의 및 상담활동



2) 공사현장 확인활동



II. 언론 보도 등

1. 언론 홍보

〈2017.3.6. 상주신문〉

2017년 3월 6일 월요일 **상주신문**

‘고충민원 옴부즈맨과 상담하세요’

지난해 38건 접수...92%처리 성과

고충민원을 처리해주는 ‘상주시 옴부즈맨’은 지난해 38건을 접수, 민원인과 집단 간 조정·중재를 추진하여 92%를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상주시는 지난해 8월 1일 옴부즈맨 사무실을 개소하고 초대 옴부즈맨으로 강석도(사진)씨를 위촉,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강석도 옴부즈맨은 감사부서에서 9년간 근무하면서 시민고충 민원처리와 집단민원처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공직자로 평가받고 있다.

상주시 옴부즈맨은 상주시와 소속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와 시정감찰 등의 기능을 수행해가 된다.

〈2017.1.25. 굿모닝상주〉

2017년 1월 25일 화요일

2017 상주시 옴부즈맨 운영

● 옴부즈맨(Ombudsman)이란?

- 시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상주시 옴부즈맨'은 2016년 8월 1일 문을 연 이래 시민에게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 시의 대외인사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이주형 사무에 적합한 시민권이 보호제도

● 주요 직무

- 시민에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 옴부즈맨이 인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조사 및 집단민원 조정·중재
- 시정에 대한 견제 및 비리의 시정 등에 대한 조력·감사·연구
-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포
- 반부패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조종·분과 등

● 운영시간 : 월 - 목요일, 10:00 - 18:00

● 사무실 위치 : 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고충민원이란?

공무에 불합리한 제도, 절차, 방법 또는 부당한 처분, 관행 또는 그 결과로서 개인, 법인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불합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 시민권 누구나 상주시 옴부즈맨을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상주시 옴부즈맨실 전화 537-7884, 7885

〈2017.3.15. 대경일보〉

2017년 03월 15일 수요일
016면 사람들

상주시 옴부즈맨, 시민 고충해결 총력

상주시가 지난해 8월 시민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을 위해 처음 문을 연 옴부즈맨제도가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사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다.

지난 2월 발간한 '2016 옴부즈맨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상주시옴부즈맨은 지난해 8월 1일 개소해 12월 말까지 도로, 건축,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38건의 민원을 접수, 조사 처리했다.

그 내용을 보면 18건에 대해 조정·중재, 2건은 각하, 시정권고 18건으로서 옴부즈맨이 제시한 의견을 해당부서에서 16건은 수용, 2건은 부서검토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민간인의 시각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판단하며 고충민원의 해결방안이 오히려 쉽게 발견되기도 한다"며 "상주시 옴부즈맨이 고충민원 해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으며 청렴하고 신뢰 받는 상주시 행정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상주/정철규 기자 dnfv825@hanmail.net

〈2017.3.15. 대구일보〉

대구일보 2017년 03월 15일 수요일 010면 경북



상주시 읍부즈맨제도가 지난해 8월 시민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처음 문을 연 이후 38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민간인 시각서 해결법 더 잘 보여요”

상주 읍부즈맨 제도 성과 민원 38건 접수·조사 처리

상주시가 지난해 8월 시민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처음 문을 연 읍부즈맨제도가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사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다.

지난 2월 발간한 2016 읍부즈맨 운영보고서에는 상주시읍부즈맨은 지난해 8월1일 개소해 12월말까지 도로, 건축,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38건의 민원을 접수, 조사 처리했다.

그 내용은 18건에 대해 조정·중재, 2건은 자하, 시정권고 18건으로서 읍부즈맨이 제시한 의견을 해당부서에서 18건은 수용, 2건은 부서검토 중에 있다.

실제로, A동 00번지 일원이 최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후 인근 토지 소유자 B씨 등 지주들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등의 부담이 커졌지만 도로개설공사가 되지 않아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없으며 지속적인 건의에도 시의 재정상 조속한 도로 개설은 곤란한 부분이었다.

이에 강서도 상주시 읍부즈맨은 “관공부서들과의 공동협의를 통해 사에서 즉각과 공재를 지원하고, 토지정용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대상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제거해 향후 도로 개설시까지 농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수 주민들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인간의 시각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판단하면서 고충민원의 해결방안이 오히려 쉽게 발견되기도 한다”며 “상주시 읍부즈맨이 고충민원 해소의 새로운 전초점이 되고 있으며 정권하고 신뢰받는 상주시 행정에 선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1@daegu.com

〈2017.3.21. 상산일보〉

상산신문

상주시 읍부즈맨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사로 발돋움

2016년 운영보고서 발간, 38건 민원처리



상주시가 지난해 8월 시민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처음 문을 연 읍부즈맨제도가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사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다.

지난 2월 발간한 2016 읍부즈맨 운영보고서에는 상주시읍부즈맨은 지난해 8월1일 개소해 12월말까지 도로, 건축,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38건의 민원을 접수, 조사 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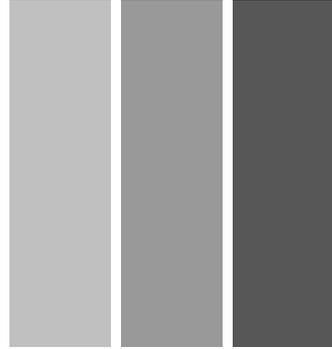
그 내용은 18건에 대해 조정·중재, 2건은 자하, 시정권고 18건으로서 읍부즈맨이 제시한 의견을 해당부서에서 18건은 수용, 2건은 부서검토 중에 있다.

실제로, A동 00번지 일원이 최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후 인근 토지 소유자 B씨 등 지주들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등의 부담이 커졌지만 도로개설공사가 되지 않아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없으며 지속적인 건의에도 시의 재정상 조속한 도로 개설은 곤란한 부분이었다.

이에 강서도 상주시 읍부즈맨은 “관공부서들과의 공동협의를 통해 사에서 즉각과 공재를 지원하고, 토지정용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대상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제거해 향후 도로 개설시까지 농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수 주민들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인간의 시각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판단하면서 고충민원의 해결방안이 오히려 쉽게 발견되기도 한다”며 “상주시 읍부즈맨이 고충민원 해소의 새로운 전초점이 되고 있으며 정권하고 신뢰받는 상주시 행정에 선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1@daegu.com



부 록

- I. 연혁
- II. 상주시 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조례
- III. 상주시 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상주시 옴부즈맨

부 록

I. 연혁

일 시	내 용
2015.10.02	「상주시옴부즈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공포(의원입법)
2016.02.29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포
2016.04.05	상주시 옴부즈맨 모집 공고
2016.05.18	상주시 옴부즈맨 추천위원회 개최(면접심사) ☞개최결과:상주시옴부즈맨추천대상자선정(강 석 도)
2016.06.24	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
2016.07.11	옴부즈맨 위촉식(시민의 방)
2016.07.18	옴부즈맨 직무수행 개시
2016.08.01	옴부즈맨 현판식(종합민원실 입구)
2016.10.02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6.12.31	2016년 고충민원 총 38건 처리
2017.09.05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옴부즈맨지원)
2017.11.28	일반 임기제 공무원 최종합격자 (옴부즈맨지원 - 사호동)
2017.12.31	2017년 고충민원 총 54건 처리

II.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10.02 조례 제10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주시 옴부즈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임·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시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민원”이란 민원인이 시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맨 기능·구성 등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맨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

② 옴부즈맨은 시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③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노무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맨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은 새로운 옴부즈맨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맨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4조(기능) ① 옴부즈맨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2. 옴부즈맨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조정·중재
 3.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4.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5.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조정·중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맨에게 요구한 사건의 조사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맨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옴부즈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4. 옴부즈맨의 행위에 관한 사항
 5.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진행중이거나 결정된 사항

제5조 (직무 관할) 옴부즈맨이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제6조 (옴부즈맨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맨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7조 (겸직금지) 옴부즈맨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정당과 관련된 직위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9조(옴부즈맨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맨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맨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맨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맨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맨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옴부즈맨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맨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1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시민은 옴부즈맨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옴부즈맨과 국가옴부즈맨에게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옴부즈맨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맨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이첩) ① 옴부즈맨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수탁기관의 장은 옴부즈맨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옴부즈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4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옴부즈맨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맨은 제14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옴부즈맨 사무국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옴부즈맨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옴부즈맨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7조(합의의 권고) 옴부즈맨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이하 “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단체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9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0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맨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단체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단체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맨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결정의 통지) 옴부즈맨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 및 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옴부즈맨로부터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단체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재심의) 단체장은 옴부즈맨이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맨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제24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맨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맨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와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제27조(사무국) ① 옴부즈맨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직원은 옴부즈맨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② 옴부즈맨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지원) 시장은 옴부즈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1014호, 201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6.02.29 규칙 제54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옴부즈맨(이하"옴부즈맨"이라 한다)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추천위원회 구성) ①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옴부즈맨의 구성을 위하여 옴부즈맨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1. 부시장, 인사업무담당국장
2. 상주시의회 의원 2명
3. 변호사, 학교장(초·중·고),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중 3명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옴부즈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추천이 끝난 후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인이 구술하는 고충민원내용을 듣고 작성하여 신청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맨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맨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맨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옴부즈맨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조(정당한 사유 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제3호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1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
3. 고충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인정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유념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조사 실시의 통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소관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고충민원조사가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처리 지연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조사 제외 등 통보)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조사 제외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반복·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① 옴부즈맨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는 이후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의 관계 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맨은 신청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신분증의 휴대 등) 옴부즈맨 사무국의 직원이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증명서를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조사 결과의 통보) 조례 제21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고충민원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13조(합의의 권고) 조례 제17조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게 한 후 옴부즈맨이 이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등 통지) 조례 제18조에 따른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과 조례 제19조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처리 권고(의견표명)서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지한다.

제15조(권고, 의견표명의 재심의) 시는 조례 제18조 및 조례 제19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 표명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옴부즈맨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보한다. 이 경우 옴부즈맨은 해당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6조(처리결과와 통보) 조례 제22조에 따른 처리결과와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 민원 권고(의견표명)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17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① 옴부즈맨은 조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대상인 시 및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 및 소속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운영상황의 보고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운영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운영상황의 공표는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9조(사무기구 설치 등) 조례 제27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기구는 공보감사담당관 소속으로 두고 사무의 운용은 옴부즈맨이 관할한다.
2. 사무기구에는 2명 이내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기구 직원은 옴부즈맨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사무를 지원한다.

제20조(공인의 사용) ① 옴부즈맨이 발송·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인을 새겨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맨 공인의 사용은 「상주시 공인 조례」 및 「상주시 공인 조례 시행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규칙제543호, 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뛰는 화합상주

상주시 옴부즈맨이 함께 합니다!

행정기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상주시 옴부즈맨으로 연락주세요

상주시 옴부즈맨실 안내

대표전화 : 054)537-7684, 7685

팩 스 : 054)537-6168

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시청사 1층 종합민원실 옆